

(비공식 번역본)

투자위원회 고시
제8/2565호
투자촉진 정책 및 기준

국내외 경제 및 투자 환경의 중대한 변화로 인해 투자위원회는 투자촉진 정책과 기준을 개정함으로써 현재와 미래 상황에 대응하고, 태국의 경쟁력을 높이고 장기적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농업, 공업, 서비스업 분야의 국가개발정책과 국가경제사회개발계획에 따라 태국의 발전 방향에 부응하고자 한다.

불기 2520년(서기 1977년) 투자촉진법 제16조, 18조 및 19조에 의거하여, 투자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투자촉진 정책과 기준을 명시한다.

1. 다음 고시문들은 폐지한다.

- 1.1 2012년 12월 3일자 투자위원회고시 제2/2557호 투자촉진 정책 및 기준과 추가 개정
- 1.2 2004년 3월 30일자 투자위원회 고시 제6/2549호 전자 및 전기기기 산업용 기계 수입에 대한 관세 면제

2. 투자위원회 또는 투자청의 고시문 중 본 고시문과 충돌이 일어날 경우, 본 고시문을 우선으로 한다.

3. 투자촉진의 비전

투자위원회는 투자촉진의 비전을 다음과 같이 설정한다.

“태국 경제를 새로운 경제로 재구성하기 위한 투자 촉진”은 다음의 3가지를 성취하기 위해 태국 경제를 재구성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한다.

- 3.1 혁신: 기술, 혁신 그리고 창의성이 주도하는 경제
- 3.2 경쟁력: 경쟁력, 빠른 적응, 높은 성장을 창출하는 경제
- 3.3 포용(Inclusive): 환경과 사회적 지속 가능성을 중시하고, 기회를 창출하고 불평등은 줄이는 경제

4. 투자촉진 정책

비전 성취를 위해 투자위원회는 투자촉진의 7단계(milestone)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 4.1 태국이 우세한 기존 산업의 고도화, 잠재력을 가진 새로운 산업의 기반 창출, 공급망 강화를 통해 산업을 재구성한다.
- 4.2 새로운 투자와 기존 사업가의 능력 고취로 스마트하고 지속가능한 산업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한다.
- 4.3 태국을 국제 비즈니스 허브 및 지역 무역과 투자 관문으로 도약시킨다.
- 4.4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경쟁력을 갖고 글로벌 연계성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 4.5 포용적 성장을 창출하기 위해 지역의 잠재력을 바탕으로 투자를 촉진한다.
- 4.6 투자청의 촉진을 받은 업체들이 지역사회와 사회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
- 4.7 비즈니스 기회를 확대하고 세계 경제에서 태국의 역할을 높일 수 있도록 태국 기업의 해외 진출을 촉진한다.

5. 프로젝트 승인 기준

투자위원회는 프로젝트 승인을 위해 다음의 기준을 규정한다.

5.1 농업, 산업, 서비스 섹터에서의 경쟁력 개발

- 5.1.1 프로젝트의 부가가치는 매출의 20% 이상이어야 한다. 단, 농업, 식품, 전자 제품 및 부품, 코일 센터 등의 프로젝트의 부가가치는 매출의 10% 이상이어야 한다.
- 5.1.2 최신 생산 공정 또는 서비스 절차는 위원회가 승인한 바대로 사용해야 한다.
- 5.1.3 새 기계를 사용해야 한다. 중고 기계를 수입할 경우, 규정은 다음과 같다.

일반적인 경우

- (1) 제조연도부터 수입연도까지 5년을 넘지 않은 중고 기계는 프로젝트에 사용할 수 있다. 중고기계에 대한 투자는 법인소득세 면제 한도 계산을 위한 투자 자본에 계상된다. 그러나 기계 수입에 대한 관세 면제는 주어지지 않고, 효율성, 환경 영향, 에너지 소비와 적절한 가격 평가에 대한 기계 성능 인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 (2) 제조연도부터 수입연도까지 5년 이상 10년 미만의 중고 기계는 프로젝트에 사용될 수 있지만 법인소득세 면제 한도 계산을 위한 투자자본에 계상될 수 없다. 기계 수입에 대한 관세 면제는 주어지지 않으며, 효율성, 환경 영향, 에너지 소비에 대한 기계 성능 인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공장 이전의 경우

- (1) 제조연도부터 수입연도까지 5년을 넘지 않은 중고 기계는 프로젝트에 사용할 수 있다. 중고기계에 대한 투자는 법인소득세 면제 한도 계산을 위한 투자 자본에 계상된다. 그러나 기계 수입에 대한 관세 면제는 주어지지 않으며, 효율성, 환경 영향, 에너지 소비와 적절한 가격 평가에 대한 기계 성능 인증서를 취득해야 한다.
- (2) 제조연도부터 수입연도까지 5년 이상 10년 미만의 중고 기계는 프로젝트에 사용될 수 있다. 중고기계에 대한 투자는 법인소득세 면제 한도와 관련하여, 투자 자본의 50%로 계상할 수 있다. 그러나 기계 수입에 대한 관세 면제는 주어지지 않고, 효율성, 환경 영향, 에너지 소비와 적절한 가격 평가에 대한 기계 성능 인증서를 취득해야 한다.
- (3) 제조연도부터 수입연도까지 10년을 초과한 중고 기계는 촉진 프로젝트에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중고기계에 대한 투자는 법인소득세 면제 한도 계상에 투자자본으로 포함할 수 없으며, 기계수입 관세 면제도 주어지지

지 않는다. 회사는 효율성, 환경 영향, 에너지 소비에 관련된 기계 성능 인증서를 취득해야 한다.

기타 경우

해상 및 항공 교통 서비스, 금형(mold and die)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10년 이상의 중고 기계를 사용할 수 있다. 회사는 수입 관세 면제를 받아볼 수 있으며, 중고 기계에 대한 투자는 법인소득세 면제 한도 계상에 투자자본으로 계산할 수 있다.

세부사항은 투자청에서 규정한 기준에 따른다.

5.1.4 토지가격과 운영경비를 제외한 투자금이 1천만 바트 또는 그 이상인 프로젝트의 경우, 완전 조업 개시일로부터 2년 내에 ISO 9000 또는 ISO 14000 인증 또는 유사한 국제표준인증을 획득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법인소득세 면제에 관한 혜택은 1년 축소된다.

5.2 환경 보호

5.2.1 환경의 질을 보호하고 환경 저해 요소를 줄이기 위한 적절하고 효율적인 지침과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투자위원회는 잠재적으로 환경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프로젝트의 장소와 오염처리 방법에 대해 특별히 고려할 것이다.

5.2.2 환경영향평가를 제출해야 하는 유형과 투자규모의 프로젝트 또는 활동들은 환경과 관련된 법과 규정 또는 장관회의의 의결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5.2.3 라영(Rayong)에 입주하는 프로젝트는 2011년 5월 2일자 투자청 고시 제Por.1/2554호 '라영 지역의 산업 촉진 정책' 내용을 준수해야 한다.

5.3 최저 투자금과 프로젝트의 가능성

5.3.1 각 프로젝트의 최소 자본 투자 요건은 위원회가 발표한 투자 촉진 활동 목록에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100만 바트이다. (토지비용과 운영경비는 제외함)
지식 기반 활동의 경우, 최소 투자 요건은 위원회에서 발표한 투자 촉진 활동 목록에 명시된 최저 연봉 비용을 기준으로 한다.

5.3.2 신규 프로젝트의 경우 자본과 부채 비율은 1:3을 초과할 수 없다. 확장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사례 별로 고려된다.

5.3.3 토지비용과 운영경비를 제외한 투자금이 20억 바트 이상인 프로젝트의 경우, 위원회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프로젝트의 타당성 검토(Feasibility Study)가 세부적으로 제출되어야 한다.

6. 양허(Concession) 프로젝트의 조건

양허 프로젝트와 국영기업의 민영화 프로젝트의 경우, 위원회 기준은 1998년 5월 25일자 및 2004년 11월 30일자 장관회의의 의결사항에 따라 고려한다.

- (1) 1999년 국영기업민영화법(State Enterprise Corporatization Act)에 따른 국영기업 투자 프로젝트는 투자촉진 대상이 될 수 없다.
- (2) BTO(Build-Transfer-Operate) 또는 BOT(Build-Operate-Transfer) 프로젝트의 경우, 해당 프로젝트를 소유한 국가기관은 입찰 안내 전 심의를 위하여 투자청에 프로젝트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자들은 투자촉진 특혜에 대한 정보를 입찰 전에 제공받아야 한다. 민간 부문이 양허 프로젝트를 위한 금액을 국가에 지불한 경우, 국가가 해당 프로젝트에 투자한 금액과 비교하여 민간 부문의 금액이 합리적이라고 간주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투자청은 해당 프로젝트를 투자촉진 대상으로 지정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한 프로젝트는 투자청에서 규정한 지침과 다음의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 (1) 소유권이 국가로 이전될 민간이 운영하는 양허 프로젝트(민간 투자사업(Build Transfer Operate 또는 Build Operate Transfer))
- (2) 입찰 과정을 통해 선발된 민간 위탁(Private party) 및
- (3) 투자촉진 대상 활동 목록에 있는 인프라 및 공공 서비스와 관련된 활동

신청인이 어떤 특정 조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위원회는 신청서 제출 전에 원칙적으로 승인을 요구하지 않고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투자 촉진을 허용하는 것을 고려할 것이다.

- (3) 민간 부문에 임대되거나 민간 부문이 관리하고 국가에 임대료를 지불하는 프로젝트를 포함한 BOO(Build-Own-Operate) 프로젝트의 경우, 투자청은 일반적인 투자촉진 기준을 적용한다.
- (4) 1999년 국영기업민영화법에 따른 국영기업 민영화와 관련하여, 민영화 이후 확장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확장을 위한 투자만이 투자촉진 대상에 해당한다. 인센티브는 일반적인 투자촉진 기준에 따라 부여된다.

7. 외국인 지분의 기준

이사회는 투자 촉진을 신청하는 프로젝트에 대한 외국인 지분에 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 7.1 불기 2522년(서기 1979년) 외국인 사업법 별첨에 있는 LIST One에 해당하는 활동의 프로젝트는 태국인 지분은 등록자본금의 51% 이상이어야 한다.
- 7.2 불기 2522년(서기 1979년) 외국인 사업법 별첨에 있는 LIST Two와 LIST Three에 해당하는 활동의 프로젝트는 외국인 지분 제한은 없다. 단, 다른 법률에 특별히 규정되어 있는 경우는 예외된다.
- 7.3 합리적인 사유가 있을 경우, 위원회는 투자촉진에 해당하는 활동에 대한 외국인 지분 한도를 설정할 수 있다.

8. 활동에 따른 인센티브(Activity-based Incentives)

위원회는 투자위원회 고시 제9/2565호 '국가 발전을 이끄는 주요 산업에 대한 투자촉진 방안'에 명시된 활동의 중요성에 따라 인센티브를 다음과 같이 부여한다.

A그룹은 법인세, 기계와 원자재 수입 관세 면제 등의 조세 혜택과 기타 비조세 혜택을 받아볼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이 5개의 그룹으로 구성되어 있다.

A1+ 그룹 혜택은 다음과 같다.

- 법인세 면제 기간은 10-13년이며, 법인세 면제액 상한 한도는 없다.
- 기계 수입에 대한 관세 면제
- 수출품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 및 필수재료에 대한 수입 관세 면제 기간은 1년이며, 위원회는 필요성과 적합성에 따라 해당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기타 비조세 혜택

A1 그룹 혜택은 다음과 같다.

- 법인세 면제 기간은 8년이며, 법인세 면제액 상한 한도는 없다.
- 기계 수입에 대한 관세 면제
- 수출품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 및 필수재료에 대한 수입 관세 면제 기간은 1년이며, 위원회는 필요성과 적합성에 따라 해당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기타 비조세 혜택

A2 그룹 혜택은 다음과 같다.

- 법인세 면제 기간은 8년이며, 면제 상한액은 투자금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토지가격과 운영자금은 제외됨)
- 기계 수입에 대한 관세 면제
- 수출품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 및 필수재료에 대한 수입 관세 면제 기간은 1년이며, 위원회는 필요성과 적합성에 따라 해당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기타 비조세 혜택

A3 그룹 혜택은 다음과 같다.

- 법인세 면제 기간은 5년이며, 면제 상한액은 투자금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토지가격과 운영자금은 제외됨)
- 기계 수입에 대한 관세 면제
- 수출품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 및 필수재료에 대한 수입 관세 면제 기간은 1년이며, 위원회는 필요성과 적합성에 따라 해당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기타 비조세 혜택

A4 그룹 혜택은 다음과 같다.

- 법인세 면제 기간은 3년이며, 면제 상한액은 투자금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토지가격과 운영자금은 제외됨)
- 기계 수입에 대한 관세 면제
- 수출품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 및 필수재료에 대한 수입 관세 면제 기간은 1년이며, 위원회는 필요성과 적합성에 따라 해당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기타 비조세 혜택

B그룹에 해당하는 활동의 인센티브는 다음과 같다.

- 기계 수입에 대한 관세 면제
- 수출품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 및 필수재료에 대한 수입 관세 면제 기간은 1년이며, 위원회는 필요성과 적합성에 따라 해당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비조세 혜택

단, 위의 내용은 위원회가 고시한 투자촉진 대상 활동 목록에 인센티브가 별도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9. 투자촉진 지역

위원회는 투자촉진 지역으로 다음을 지정한다.

9.1 동부경제회랑

9.2 불기 2564년(서기 2021년) 특별경제구역 개발에 관한 총리실 규정에 따른 특별경제구역

9.3 남부 국경지방 및 남부 국경지방 시범도시사업 지역

9.4 1인당 소득이 낮은 20개 지방: 깔라썬(Kalasin), 차이야퐁(Chaiyaphum), 나컨파놈(Nakhon Phanom), 난(Nan), 붕깐(Bueng Kan), 부리람(Buri Ram), 팻타룽(Phatthalung), 프래(Phrae), 마하싸라캄(Maha Sarakham), 묵다한(Mukdahan), 매형썬(Mae Hong Son), 야쏘톤(Yasothon), 리이엣(Roi Et), 씨싸켓(Si Sa Ket), 싸꼐나컨(Sakhon Nakhon), 싸깨우(Sa Kaew), 쉐린(Surin), 뇡부어람푸(Nong Bua Lamphu), 우본랏차타니(Ubon Ratchatani) 및 암낫짜른(Amnatcharoen)

9.5 위원회에서 승인했거나 촉진하고 있는 혁신 지구를 포함한 과학 기술 지역(Science and Technology Park)

10. 개발 대상 목표 지역(Target Area)에 대한 추가 인센티브

10.1 산업지역 개발을 위한 추가 인센티브

프로젝트가 산업단지 또는 촉진산업지역에 위치할 경우, 법인세 면제 기간이 1년 추가된다.

단, 산업단지 또는 촉진산업 구역 내에 위치해야 하는 조건으로 명시된 프로젝트에는 해당 인센티브는 적용되지 않는다.

10.2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추가 인센티브

9.4항에 명시된 투자촉진구역에서 프로젝트가 위치할 경우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아 볼 수 있다.

- (1) 법인소득세 면제 기간이 3년 추가된다. 단, A1 그룹과 A2 그룹에 해당하는 활동은 촉진활동에서 발생한 순이익에 대한 법인 소득세를 법인세 면제기간 만료일로부터 5년간 일반 세율에서 50% 감면받을 수 있다.
- (2) 촉진 활동에서 매출이 처음 발생한 날로부터 10년간 운송비, 전기세 및 수도세에 대한 이증공제를 허가한다.
- (3) 프로젝트의 인프라 설치 또는 건설 비용의 25%가 통상적인 감가상각비와 더불어 순이익에서 공제된다. 해당 공제는 투자촉진 대상 활동으로 최초 수입이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1년 또는 수년 동안 발생한 순이익에 적용된다.

단, 기타 개발 대상 지역에 대한 추가 인센티브는 관련 고시에 따라 부여된다.

11. 추가 인센티브 부여에 대한 기준

- (1) 같은 프로젝트의 연속 생산 공정에서 지속적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업스트림 제품 생산 유형에 따라 프리미엄 혜택 부여에 대해 고려할 수 있다.
- (2) 추가 인센티브, 활동에 따른 인센티브, 기타 방안에 따른 프로젝트의 법인세 면제 기간은 모두 합산하여 8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단, A1+ 그룹의 활동과 추가 혜택을 받아보는 조건 또는 방안으로 명시되어 있는 활동은 제외되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법인세 면제 기간은 최대 13년을 초과할 수 없다.
- (3) 프로젝트의 법인세 면제 감면 혜택은 35(1)조에 따라 법인세 면제 기간이 모두 합하여 8년을 넘지 않은 혜택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
- (4)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에 따라 부여되는 제35(1)항에 따른 법인세 감면 기간은 다른 방안을 통해 받아보는 혜택을 모두 합하여 총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 (5) 활동 유형에 따라 촉진을 받기 위해, 또는 어떤 방안에 따라 추가 혜택을 받기 위해 이루어지는 투자, 지출 및 실행은 다른 방안에 따른 추가 인센티브에 재적용할 수 없다.

12. 프로젝트가 촉진을 받는 동안 받아들 수 있는 기계수입 관세 면제 혜택

효율성을 개선하고 경쟁력을 개발하기 위해, 위원회는 프로젝트가 촉진을 받는 동안 다음 기계류에 대한 수입관세 면제 혜택을 촉진 프로젝트에 부여한다.

- 12.1 연구개발을 위해 사용되는 기계
- 12.2 오염 방이나 처리에 사용되는 기계
- 12.3 프로젝트의 완전조업의 시작 여부와 관계없이, 기존 기계를 개선하거나 교체하기 위해 또는 기존 프로젝트의 생산력을 증대하기 위한 전자제품과 부품을 제조하는 촉진 프로젝트에 사용되는 기계

13. 연구개발을 위해 수입되는 제품에 대한 수입관세 면제 혜택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위원회는 연구개발 활동이 포함된 프로젝트로 촉진을 받는 기업에게 연구개발과 관련된 모든 실험을 할 수 있도록 한 번에 1년씩 수입 제품의 관세가 면제되는

혜택을 부여한다. 본 고시에 따라 수입 관세가 면제되는 수입품은 기계나 원료 또는 필수 재료로 분류되어 수입 관세 면제를 받는 기계나 원료 또는 필수 재료여서는 안된다. 해당 수입세 면제는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유형, 수량, 기간, 조건 및 절차에 대한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14. 기존 촉진 기업의 사업확장 지원

투자촉진정책 개정의 영향을 완화하고 기존에 촉진을 받고 있는 기업이 사업확장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하기 위해 위원회는 본 고시에 따라 투자촉진 대상 활동이 아닌 기존의 촉진 프로젝트가 현재 사업장 위치에서 생산 능력을 확대하는 것을 허가한다. 추가 생산의 일부는 기존 투자촉진증에 명시된 인센티브에서 남아있는 혜택만큼 혜택을 사용할 수 있다. 촉진 업체는 투자청에서 지정한 기준에 따라 프로젝트 수정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15. 법인세 혜택의 사용

촉진 조건에 따라 인센티브가 효과적이고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고, 투자 촉진에 대한 비용-편익 평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촉진 기업은 해당 연도의 법인세 혜택이 부여되기 전에 투자청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보고해야 한다. 보고 기준과 방법은 투자청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16. 상기 기준은 위원회가 투자촉진과 조세 특혜를 승인하는 지침으로 사용하는 일반적인 기준이다.

17. 본 고시가 시행되기 전에 투자촉진을 신청했거나 투자촉진 승인을 받은 프로젝트 또는 투자촉진을 받고 있는 프로젝트의 경우, 전 고시에서 정한 기준과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8. 투자촉진 신청서를 이미 제출한 프로젝트의 경우, 또는 프로젝트가 이미 승인을 받은 경우, 또는 2023년 1월 3일 전에 이미 촉진을 받은 프로젝트가 세금 혜택을 아직 사용하지 않았다면, 본 고시의 기준과 조건에 따라 인센티브를 신청할 수 있다. 의향서(Letter of Intention)는 2023년 6월 30일 이내에 투자청에 제출해야 한다.

19. 본 고시는 2023년 1월 3일 이후 제출된 신청서부터 시행한다.

본 고시문은 2023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

고시일 2022년 12월 9일

쁘랏웃 찢오차 장군(General Prayut Chan-o-cha)

(Prayut Chan-o-cha)

총리

투자위원회 의장